

[제16호의2 서식]

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

금액 단위 : 원

예산과목 (채권의종류)	발 생 액			소 멸 액			본 년 도 말 현 재 액														비 고
	전년도 이전 발생액 이 월 액	증 감 액	본년도 발생액	합 계	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소멸액	본년도 발생액 중 소멸액	합 계	일 반 분					관 리 정 지 액			결 손 처 분 액			합 계		
								전년도이전발생액		본년도발생액			합 계	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정지액	본년도 발생액 중 정지액	합 계	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처분액	본년도 발생액 중 처분액		합 계	
								이행기한 도래액	이행기한 미도래액	계	이행기한 도래액	이행기한 미도래액									

기재요령 : (1) "채권의종류"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 3의규정에 의한 채권의 종류를 세입예산과목으로 분류하여 예산과목을 쓰고 ()에 채권의 종류를 쓰되 이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회계의 예산과목과 과목명을 쓸 것.

(2) "발생액"란의 "전년도 이전 발생액"란 중 "이월액"란에는 전년도 계산서의 연도말 현재액을 써 넣을 것.

(3) "발생액"란의 "전년도 이전 발생액"란 중 "증감액"란에는 다음 사항을 써 넣을 것.

(가) 발생연도가 전년도 이전분으로서 채권관리부 등에 등재가 본년도에 이루어진 채권액.

(나) "이월액"란에 기재된 채권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본년도에 변경하였거나 정정한 경우의 증감액.

(다) 증감액에 대하여는 채권의 종류마다 증감사유별 건수 및 금액을 "비고"란에 써 넣을 것.

(4) 이 계산서에는 별첨 1,2서식의 부표를 붙일 것.

(5) 국가기관 상호 간의 채권을 계상하지 말 것.

[제16호의2 서식 부표1]

채 권 감 소 액 명 세 서

금액 단위 : 원

발 생 연 도	채 권 의 종 류	감 소 사 유	채 무 자 수	감 소 액	비 고
전 년 도 이 전 발 생 분					
소 계					
본 년 도 발 생 분					
소 계					
합 계					

기재요령 : (1) "발생연도"에는 전년도 이전 발생분과本年度 발생분을 구분할 것.

(2) 이 표는 채권관리계산서의 "발생액"란과 "소멸액"란에 계기한 채권의 감소액 중 면제, 시효완성, 불납결손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,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채권과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정리한 채권을 계기하고, 변제(대물변제를 포함한다), 상계 및 충당에 의하여 소멸된 것은 제외할 것.

(3) "감소액"란에는 "채권의 종류"별 및 "감소사유"별로 구분하여 합계액을 기재할 것.

[제16호의2 서식 부표2]

관 리 정 지 액 명 세 서

금액 단위 : 원

채권발생연월일	채권의 종류	채 무 자 명	관 리 정 지 액	관리정지연월일	정 지 사 유	비 고

기재요령 : (1) 이 표는 채권관리계산서의 "본년도말 현재액"란의 "관리정지액"란에 계기된 채권 중 본년도에 관리정지한 것에 대하여 작성할 것.
 (2) 매건별로 계기하되 채권금액이 소액으로서 추심을 요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일괄(○○○ 외 X X명) 기재할 것.